

용인시 성북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05. 10. 5 규칙 제 488호
개정 2006. 10. 13 규칙 제 514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22. 7. 18 규칙 제1080호(회계관리에 관한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성북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6. 10. 13>

제2조(납부고지서 등)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.

②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,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.

③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.

④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.

제3조(분할납부신청서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,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심의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.

제4조(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)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 있어 분할납부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
1. 제1회 납부고지서 : 분할납부승인시

2. 제2회 납부고지서 :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

② 부담비용의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납부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정한 납부예정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한다.

제5조(변경납부고지서 등) ① 개발면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
② 납부된 기반시설부담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변경이 분할납부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잔액을 조정하는 변경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일시납부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납부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부할 부담비용의 범위 안에서 정산할 수 있다.

제6조(회계관계공무원)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

1. 징수관 : 기반시설(특별회계)업무 담당 실·국장

2. 분임징수관 : 기반시설(특별회계)업무 담당 담당관·과장

②기반시설특별회계관리자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부과대장·징수대장·사용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
제7조(준용) 「용인시 성북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용인시 시세 조례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및 「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06. 10. 13, 2022. 7. 18>

부칙

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. 10. 13 규칙 제514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7. 18 규칙 제1080호,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
⑨ 용인시 성북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 「용인시 재무회계 규칙」 ”을 “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및 「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”으로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06. 10. 13>

성북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고지서			
납 부 의무자	주 소		
	성 명 (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	
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전화번호	
비 용 부 담 내 역			
사 업 명 칭			
비용부담대상지			
부 담 비 용			
기반시설 개요			
납 부 방 법		납부기한	. . .
<p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부담 비용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용 인 시 장 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귀하</p>			
<p>※ 첨부서류: 1.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출내역서 2. 이의신청서류</p>			

210mmx297mm(보존용지(2종)70g/m²)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06. 10. 13>

성북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				처리기간
				15일 이내
납 부 의 무 자	주 소			
	성 명 (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		
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전화번호	
비 용 부 담 내 역				
사 업 명 칭				
비용부담대상지				
부 담 비 용				
기반시설 개요				
납 부 방 법		납부기한		
심 의 결 과				
<p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심의결과서를 통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용 인 시 장 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귀하</p>				

210mmx297mm(보존용지(2종)70g/m²)

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06. 10. 13>

성북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				처리기간
				15일 이내
납 부 의 무 자	주 소			
	성 명 (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		
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전화번호	
비 용 부 담 내 역				
사 업 명 칭				
비용부담대상지				
부 담 비 용				
기반시설 개요				
납 부 방 법		납부기한		. . .
분 할 납 부 신 청 심 의 결 과				
<p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용 인 시 장 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">귀하</p>				

210mmx297mm(보존용지(2종)70g/m²)

